

#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2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4.

발의자 : 이상현 · 김승남 · 안규백  
조정훈 · 유정주 · 신정훈  
박정 · 서영교 · 양경숙  
임오경 · 김홍걸 의원  
(11인)

## 제안이유

1972년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과 보편화가 시작된 이후, 사회적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하는 등 2024년 5월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음.

그러나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및 유형별 분법 체계 전환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자연유산의 조사 · 심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자연유산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중대한 입법 공백이 불가피하여, 자연유산 보호계획 수립 및 지정 등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조사 · 심의에 대한 입법 불비를 해소하고자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.

또한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·도지정문화재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시·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한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제도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연유산자료를 추가하고,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정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 등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·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.

끝으로 「국가유산기본법」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 를 위해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을 「국가유산기본법」 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가. 천연기념물·명승 및 시·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시·도지사가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한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0조제2항).

나.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자연유산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7조의2, 제7조의3 및 제41조의2).

다. 자연유산 관련 타법 제·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고자 함(안 제5조제2항, 제6조, 제9조, 제18조제1항제3호, 제39조제1항, 제56조제3항, 제63조, 제69조 등).

라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일을 「국가유산기

본법」 등 시행일에 맞추도록 함(안 부칙 제1조).



##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40조”를 “제40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명승 또는 시 · 도자연유산을”을 “명승, 시 ·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”로 한다.

4의2. “자연유산자료”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 · 경관적 ·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 · 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”을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2.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
3. 동·식물학, 지질학, 지구과학, 조경학, 인류학, 민속학,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
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,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3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 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

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
  2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
  3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 
관한 사항
  4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
  5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  6. 자연유산의 국외 반출·입에 관한 사항
  7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 
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8.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(이하 “유네스코”라 한다) 자연유산 선  
정에 관한 사항
  9.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  
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 
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·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 
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(이하 “합동분과위원회”라 한다)  
를 열 수 있다.

④ 문과위원회 또는 합동문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·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·심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위원회, 문과위원회 및 합동문과위원회의 조직,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 전단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 중 “문화재위원회”를 “자연유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문화재위원회”를 “자연유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문화재위원회”를 “자연유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문화재위원회”를 “자연유산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”을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”를 “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”로, “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”를 “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문화재수리업자·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”를 “국가유산수리업자·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문화재

위원회(이하 “시 · 도문화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시 · 도자연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문화재위원회”를 “자연유산위원회”로, “시 · 도자연유산으로”를 “시 ·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(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자연유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시 ·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”을 “시 ·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”으로, “시 ·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”을 “시 ·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에 따라 시 · 도자연유산을”을 “제4항까지에 따라 시 ·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까지에 따른 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제4항까지에 따른 시 ·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”로 한다.

②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1조제1항 중 “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자연유산”으로 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시 ·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) ① 시 ·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·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· 심의하기

위하여 시·도에 자연유산위원회(이하 “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자연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·심의에 관한 사항

2.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

3.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

③ 시·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(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의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면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56조제3항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를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을”로 한다.

제63조 전단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“국가지정문화재””를 ““국가지정문화유산””으로, ““문화재”는 “자연유산”으로, ““지정문화재”는”을 ““문화유산”은 “자연유산”으로, ““지정문화유산”은”으로, ““임시지정문화재”는”을 ““임시지정문화유산”은”으로 한다.

제6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

제69조제1항 전단 중 “「문화재보호법」”을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국가지정문화재””를 ““국가지정문화유산””으로, ““지정문화재”” 또는 “문화재”는 “천연기념물등”으로, “임시지정문화재”는 ““지정문화유산”” 또는 “문화유산”은 “천연기념물등”으로, “임시지정문화유산”은 ““임시지정문화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”은 “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“매장문화재”” 또는 “문화재”는 “천연기념물”로, “지정문화재”는 ““매장유산”” 또는 “문화유산”은 “천연기념물”로, “지정문화유산”은 ““임시지정문화””으로 한다.

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9조 중 “명승(시·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”을 “명승(시·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임시지정시·도자연유산”을 “임시지정시·도자

연유산, 임시자연유산자료”로 한다.

②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제1항 중 “임시지정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임시지정시 · 도자연유산 및 임시자연유산자료”로 한다.

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“천연기념물 · 명승 및 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천연기념물등”으로 한다.

④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단서 중 “임시지정시 · 도자연유산”을 “임시지정시 · 도자연유산 · 임시자연유산자료”로 한다.

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제4호 중 “명승 및 시 · 도자연유산과”를 “명승 · 시 ·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”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</p>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“시 · 도자연유산”이란 천연 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 유산 중 역사적 · 경관적 ·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<u>제40조</u>에 따라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법률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제40조</u></p> <p><u>제1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<u>4의2. “자연유산자료”란 제2호</u></p> <p><u>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</u></p> <p><u>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</u></p> <p><u>사적 · 경관적 · 학술적 가치가</u></p> <p><u>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</u></p> <p><u>시 · 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</u></p> <p><u>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</u></p> <p><u>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u></p>
5. “천연기념물등”이란 천연기	5. -----



한다.

1. ~ 9. (생략)

② 보호계획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<신설>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자연유산위원회의 설치)

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
2.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

### 사한 사람

3. 동·식물학, 지질학, 지구과학, 조경학, 인류학, 민속학,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
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자료수집·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,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7조의3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

① 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

### <신 설>

## 사항

2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

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

3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호

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

그 해제에 관한 사항

4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

변경에 관한 사항

5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

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

6. 자연유산의 국외 반출·입

에 관한 사항

7.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

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

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

정되는 사항

8.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

(이하 “유네스코”라 한다) 자

연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

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

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

여 자연유산 유형별로 업무를

나누어 조사·심의하기 위하여

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

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 
조사·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 
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 
위원회(이하 “합동분과위원회”  
라 한다)를 열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관하여 조사·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·심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합동  
분과위원회의 조직, 분장사항  
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 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건설공사 시 천연기념물등  
의 보호)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  
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(이하  
“건설공사”라 한다)로 인하여  
천연기념물등이 훼손, 멸실 또는  
수몰(水沒)될 우려가 있거나  
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역사문  
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 
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 
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  
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





것

② (생 략)

제39조(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)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이 제1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문화재수리 업자에게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 략)

2.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성격상 문화재수리업자·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에 대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② (생 략)

제40조(시·도자연유산의 지정)  
① 시·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제11조에

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-----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 국가유산수리업자·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시·도자연유산의 지정)  
① -----  
-----

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·도문화재위원회(이하 “시·도문화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시·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### **<신 설>**

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·도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동물·식물을 시·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

# 시 · 도자연유산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
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 
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  
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  
정할 수 있다.

③ ----- 자연유산위원회 -----  
회 -----

----- 시 · 도 자연유산이나  
자연유산자료(보호물이나 보호  
구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 
-----.  
자연유산-----

## 자연유산-----

-----  
-----

## ④ ----- 시 · 도 자연유 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

종의 서식지 · 번식지 · 도래지  
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 
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 
동물 · 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  
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시 ·  
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  
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 
시 · 도자연유산을 지정할 때에  
는 해당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  
자치시 ·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 
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  
록 “자연유산” 앞에 해당 특별  
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도  
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  
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 
시 · 도자연유산의 지정기준과  
절차 ·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 
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 
례로 정한다.

제41조(시 · 도자연유산의 보호물  
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 ① 시 ·  
도지사는 제40조에 따른 지정을  
할 때 시 · 도자연유산의 보호를  
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

⑥ ----- 제4항까지에 따른  
시·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  
자료-----  
-----  
-----.

제41조(시 · 도자연유산의 보호물  
또는 보호구역의 지정) ① -----  
-----  
---- 자연유산 -----  
-----

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~ ⑤ (생 략)

<신 설>
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1조의2(시 · 도자연유산위원회

의 설치) ① 시 · 도지사의 관할  
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·  
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  
사 · 심의하기 위하여 시 · 도에  
자연유산위원회(이하 “시 · 도  
자연유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 
다.

② 시 ·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조  
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  
례로 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  
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자연유산의 보존 · 관리 및  
활용과 관련된 조사 · 심의에  
관한 사항

2.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 
사항

3.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 
관한 사항

4.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 
관한 사항

③ 시 ·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 
있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(보

	<u>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)</u> <u>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</u> <u>게 요청하려면 시·도자연유산</u> <u>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</u> <u>한다.</u>
제56조(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) ①·②(생략) ③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 및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복원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전통조경 표준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	제56조(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문화유산을 ----- ----- -----.
제63조(준용규정) 자연유산의 관리에 관하여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, 제49조,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, 제81조, 제83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지정문화재” 또는 “사적”은 “천연기념물 또는 명승”으로, “문화재”는 “자연유산”으로, “지정문화재”는 “천연기념물등”으로, “보호물” 또는 “보호구역”은 이 법 제13조에 따른 “보호물” 또는 “보호구역”으로, “임시지정문화재”는	제63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. ----- “국가지정문화유산” ----- ----- “문화유산”은 “자연유산”으로, “지정문화유산”은 ----- ----- ----- ----- “임시지정문화유산”은

<p>“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”으로 본다.</p>	----- -----.
<p>제65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</p>	제65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) ----- ----- ----- -----.
<p><u>1. 문화재위원회 및 시·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</u></p>	<p><u>1. 자연유산위원회 및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</u></p>
<p>2. ~ 6. (생략)</p>	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9조(별칙 등의 준용) ① 별칙에 관하여 「문화재보호법」 제90조, 제90조의2,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,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국가지정문화재” 또는 “사적”은 “천연기념물 또는 명승”으로, “지정문화재” 또는 “문화재”는 “천연기념물등”으로, “임시지정문화재”는 “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”으로 본다.</p>	<p>제69조(별칙 등의 준용) ① ----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. ----- “국가지정문화유산” ----- ----- “지정문화유산” 또는 “문화유산”은 “천연기념물등”으로, “임시지정문화유산”은 ----- -----.</p>
<p>② 별칙에 관하여 「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매장문화재” 또는 “문화재”는 “천연기념물”로, “지</p>	<p>② ----- 「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. ----- “매장유산” 또는 “문화유산”은 “천연기념물”로,</p>

정문화재”는 “천연기념물 또는 명승”으로, “임시지정문화재”는 “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”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(시·도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) 및 그 보호물·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「문화재보호법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“지정문화유산”은-----  
-----“임시지정문화유산”  
은-----  
-----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----- 2024년 5  
월 17일 -----.

제9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명승(시·도  
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포  
함한다)